

제 920 호  
1982. 7. 16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김 성 배  
 편집 : 공 보 관 전 명 호  
 전 화 725-7834  
 인 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전 화 725-6090

# 시 보

## 차 례

◎ 규 칙  
 제 1982 호 :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개정규칙..... 3

◎ 고 시  
 제 268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3  
 제 269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변경허가..... 4  
 제 270 호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5  
 제 271 호 : 도시계획사업 ( 시장 ) 시행허가..... 7  
 제 272 호 : 도시계획시설 ( 공원 ) 실효및결정..... 8

< 이면계속 >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 서울특별시

◎ 공 고	
제 315 호 : 도시계획사업 ( 도로 ) 실시계획공람공고.....	9
제 317 호 : 특정열사용기자재시공업지정취소.....	10
제 320 호 : K·S 표시정지처분공고.....	11

◎ 사 령

**규 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82.7.19

서울특별시장

◎서울특별시규칙제 1982 호

서울특별시인사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4 조 제 3 항중 “도는 결원보충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2 조 및 제 13 조를, “결원보충 또는 승진임용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 12 조, 제 13 조, 제 55 조 및 제 82 조”로 한다.

제 55 조 제 1 항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승진단위 기관간의 직급별 결원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기관단위별 결원 범위내에서의 승진임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승진 단위기관별 정원비례에 의거 승진예정 인원을 균형 배정하여 기관단위별로 승진임용케하거나, 행정직 심사 승진을 제외하고는 시 전체 단일 승진 후보자

명부에 의거 시장이 승진 임용할 수 있다.

제 82 조 제 1 항중 “작성하되”를 “작성하거나 제 55 조 제 1 항 단서를 적용할 경우에는 시장이 시전체 직급별 단일명부로 작성하되”로 “만점으로 하여 작성하되”를 “만점으로 한다. 다만,”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 268 호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호('82.2.3)로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126 호('82.3.27)로 지적 승인된 성동구 자양동 591 번지 일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학교)시행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521 호('81.12.31)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제도서는 성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7.16

서울특별시장

1. 사업의 시행지 : 서울시 성동구 자양동 591 번지 일대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 명칭 - 능동국민학교 신축공사

3. 사업의 규모 : 시행면적 7,604.8평방미터

시설 지하 279 평방미터  
1 층 1,268 " "  
2 층 1,067.8 평방미터  
3 층 1,067.8 " "  
4 층 1,067.8 " "  
옥탑 73.75 " "  
계 4,824.2 평방미터 ( 1,459.1평

4.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 가 2-77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착수 '82.4  
○ 준공 '84.6.15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7. 토지조서 및 위치도 계획평면도 및 공사 설계도서 : 별첨생략

◎서울특별시고시제 269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변경허가

서울특별시 고시 제 378호 ('77.10.27)

로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된 돈암동 173-1 의 23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 고시 제 463 호 ( '79.12.10 )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변경되었기 이를 고시한다.

1982.7.16

서울특별시 장

가. 사업시행지 : 성북구 돈암동 173-1 의 23 필지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

다. 사업의 면적 및 규모  
1 ) 당초 면적 및 규모

○ 지하 1 층, 지상 2 층 ( 2,617 m<sup>2</sup> )  
○ 지하 1 층, 지상 4 층,  
옥탑 ( 5,224.75 m<sup>2</sup> )

2 ) 변경 면적 및 규모

○ 지하 1 층, 지상 2 층 ( 2,617 m<sup>2</sup> )  
○ 지하 1 층, 지상 5 층,  
옥탑 ( 6,558.50 m<sup>2</sup> )

라. 사업의 시행자 주소, 성명 : 서울시 성북구 돈암동 173-1 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장

마. 공사기간 : '82.7 - '83.12.31

바.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도면생략)

\* 도면은 성북구청 도시정비과에 보관함.

◎ 서울특별시고시 제 270 호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시행허가

1. 서울특별시 고시 제 50 호 ( '82. 2.3 ) 로 도시계획 시설 ( 학교 ) 결정 및 동 고시 제 120 호 ( '82. 3.22 ) 로 지적승인된 강동구 길동 371-1 의 18 필지 8,397.6 ( 2,540.2 평 )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24 조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 '81.12.31 )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 학교 ) 을 시행허가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시설과와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각각 비치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7.1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강동구 길동 371-1 번지 일대

-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도시계획사업 ( 학교 )
  - 서울천동국민학교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감

- 라. 사업규모 및 면적
- 지적 8,397.6  $m^2$  ( 2,540 평 )
  - 건축면적 1,096.85  $m^2$
  - 건축연면적 4,033.7  $m^2$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82.8.15 ~ '84.8.15

바.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 별첨 )

사. 토지 소유자와 토지 수용법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 주소, 성명 ( 별첨 )

아. 시행허가 설계도서 생략

서울특별시장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소재지 지목, 지적, 소유자이외의 권리명세

명 칭	소 재 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유자이외의권리명세
서울	강동구	371-1	대	209.2	없음
천 동	길동	372-1	"	371.3	"
국민학교		371-2	"	240.7	"
		371-3	"	350.3	"

명칭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이외의 권리명세
		371-5	대	415.7	없음
		371-7	"	305.4	"
		372-2	"	268.2	"
		372-3	"	463.5	"
		372-4	"	378.6	"
		372-6	"	203	"
		373-1	"	378.6	"
		371-4	"	529.3	"
		372-5	"	1,024.8	"
		373-2	"	458.8	"
		374-1	"	990.5	"
		371-16	도로	1,179.2	"
		371-6	대	274.6	"
		373-3	"	212	"
		373-11	"	143.9	"
계		19필지		8,397.6	

토지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학교명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소유자 주소	성명
서울 천동 국민학교	강동구 길동	371-1	대	209.2	성동구송정동 10-4	이석기
		372-1	"	371.3	강남구청담동삼익아파트 11 동 1102 호	장기상
		371-2	"	240.7	강동구천호동 132	이완수
		371-3	"	350.3	"	"
		371-5	"	415.7	"	"
		371-7	"	305.4	"	"
		372-2	"	268.2	"	"
		372-3	"	463.5	"	"
		372-4	"	378.6	종로구평창동 345-34	장옥기
		372-6	"	203	강동구길동 75-9	박홍산
		373-1	"	378.6	강동구천호동 51-7	장원수
		371-4	"	529.3	강동구둔촌동 77-8	방삼남
		372-5	"	1,024.8	강동구길동 230-1	김진일
		373-2	"	458.8	여의도동 1-892	정우택외 1인
						강동구천호동 161-10

학교명	소재지	지 번	지 목	지 적	소 유 자 주 소	성 명
		374-1	대	990.5	도봉구미아동 403-24	최완호 외 2인
		371-16	도로	1,179.2	서울특별시	
		371-6	대	274.6	상도동 244-57	강한덕
		373-3	"	212	종로구사직동 228	남상구 외 1인
		373-11	"	143.9	"	"
계		19 필지		8,397.6		

◎ 서울특별시고시제 271 호

도시계획사업 (시장)  
시행허가

1. 서울시고시제 101 호 ('81.4.4) 로  
시설결정되고 서울시고시제 132 호  
( '81.4.20) 로 지적승인된 암사동  
451-16 외 1필 토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장) 을 시행  
허가하였기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건설부 고시제 521 호 ('81.12.31)  
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

1982.7.16

서울특별시장

가. 사업시행지 : 강동구암사동 451-

16, 17

나.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 : 도시계획사업 (시장)

명칭 : 양지시장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주소 : 강동구암사동 451-16

성명 : 양지임업(주) 이장수

라. 사업규모

지적 : 1,600.2 m<sup>2</sup>

건축내역 : 기존 1,653.72 m<sup>2</sup>

증축 747.44 m<sup>2</sup>

마.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 '82

7.30 - '84.7.30

바. 사용할 토지의 명세

위치 : 강동구암사동 451-16, 17

지적 : 1,600.2 m<sup>2</sup>

소유자 : 이 장 수

사. 위치 및 계획평면도 : 별첨 (생략)

◎ 서울특별시고시제 272 호

도시계획시설 (공원)  
실효및결정

1. 서울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시설 (공원) 인 북한산공원등 7개소공원계획은 건설부고시제 138 호 (77.7.9) 및 동 고시제 418 호 (78.12.26) 제 104 호 (79.4.4) 로 재정비결정 및 변경 결정된후 법상 지적승인 시효기간내 지적승인고시 미이행으로 실효되었기 이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2 조 동법제 14 조 제 1 항 동법시행령 제 10 조 규정 및 건설부고시 제 521 호 (81.12.31) 의 권한 위임사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 (공원) 실효 및 재결정

나.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1) 시설 (공원) 결정조서

구분	공원번호	공원종류	공원명칭	위 치	면적(㎡)	비. 고
결정	5	자연공원	북한산공원	도봉, 성북, 종로, 서대문, 은평, 경기도고양군일대	44,196,190	재결정
"	21	"	은수 "	구로구 은수, 개봉, 강동, 강서구 신정, 신월동	4,112,000	"
"	23	"	봉산 "	경기도 부천시 일대 은평구 갈현, 구산, 역촌, 마포구, 수색동	3,120,300	"
"	근01-09	근린공원	낙산 "	종로구 동승동, 창신동	170,700	"
"	근07-06	"	백련 "	은평구응암동, 서대문구홍은동	1,320,000	"

하고 이를 고시한다.

2.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와 해당지역 관할구청 (부산시청, 고양군청) 및 동(면)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인다.

1982.7.19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 (공원) 실효

- 1) 시설 (공원) 실효조서 : 별항의 결정조서 내용과 같으므로 이와 가름함
- 2) 실효사유 : 도시계획법 제 14 조 제 1 항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
- 3) 실효일자 : 위의 결정고시후 2년이 되는날의 다음날 (79.7.9. 80.12.26 81.4.4)
- 4) 실효도면 : 결정도면과 같으므로 이와 가름함.

구분	공원번호	공원종류	공원명칭	위 치	면적 (㎡)	비 고
결정	근08-03	근린공원	와우공원	마포구 창천, 상수동	60,700	재결정
"	근11-01	"	노량진 "	동작구 노량진, 흑석, 상도, 대방, 본동	464,480	

2) 결정도면 : 별첨 (생략)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315 호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공람공고

1. 서울시 고시제 3호 (59.1.18) 로 시설결정 및 지적고시되고 서울시 공고 제 237호 (82.6.3) 로 공람 공고한바 있는 오류국교 진입로확장공사 구간연장에 대하여 실시 계획인가를 득 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조 2 의 규정에 의거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일반인에게 공람 공고함.
2. 관계도서는 구로구청 토목과,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의 소유자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자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갈음함.

1982.7.16

서울특별시장

공 램 개 요

1. 사업시행지 : 구로구 오류동 40 의 4 - 13 의 54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오류국교 진입로 확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도로확장 B = 3-4 → 6 m L = 60 m
4.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장
5.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  
인가일 - 82.8.30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 별첨토지조서
7. 토지및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주소, 성명 : 별첨 토지, 건물조서 첨부 토지 및 건물조서 1 부.

토 지 조 서								
번 호	소 재 지		지 목	지 적	편 입 면 적	실제이용 상 황	소 유 자	
	동 명	지 번					인 명	주 소
1	오류동	40-4	대	149 m <sup>2</sup>	28 m <sup>2</sup>	도 로	임용택	오류동 41-1
2	"	41-4	"	644 m <sup>2</sup>	198 m <sup>2</sup>	대	황성창	영등포동 7가 328
3	"	13-54	"	780 m <sup>2</sup>	232 m <sup>2</sup>	"	이순국	오류동 13-54

건 물 조 서								
번 호	소 재 지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 량	실제 이용 상 황	소 유 자	
	동 명	지 번					성 명	주 소
1	오류동	41-4	점포및 사무실	철근콘 크리트 평육개	1층11.4평 2층11.4평	1층집근 2층병원 (치과)	임용택	오류동 41-1

○ 서울특별시공고제 317 호

특정열사용기자재  
시공업지정취소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 30 조

제1항에 의거 특정열사용 기자재 시  
공업지정을 취소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 28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한다.

1982.7.16

서울특별시장

○ 취소업체명

지정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위 반 내 용
중구 23호	동진종합기업(주)	추 국 일	서울중구신교동 123-1	무단폐업
38호	동양공업사	이 강 원	서울중구민리동 2가 204	"
39호	서전실업(주)	노 석 응	서울중구연동 2가 190-30	무단장소이전
66호	대호종합설비(주)	서 명 훈	서울중구신남동 369-33	무단폐업

◎ 서울특별시 공고제 320 호

K·S 표시정지처분공고

표시정지 처분하였기 동법시행규칙 제 21 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공고한다.

공업표준화법 제 21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K·S ( 한국공업규격)

1982.7.19

서울특별시장

1. 허가번호	1939	1986	1945	2254
2. 허가일자	80.1.14	80.2.12	80.1.21	80.12.27
3. 제조업체명	신일공업사	영남공업사	국일공업사	대륙금속공업사
4. 대표자	이 정 수	권 태 정	권 태 산	오 항 선
5. 소재지	영등포구독산동 612-3	영등포구문래동 5가19-13	강서구신정동 1동596-20	영등포구양평동 4가33-1
6. 품 목	수도꼭지 ( 가로 꼭지 59 φ )	좌 동	좌 동	수도꼭지 ( 온냉수 혼합꼭지 )
7. 규격번호	KSB 2331	"	"	"
8. 처분기간	공고일로부터 3개월	좌 동	좌 동	좌 동
9. 처분사유	K·S 기준미달	"	"	"

사 령

령제 374 호

◎ 1982년 7 월 16 일자 령제 373 호

내 무 국

이 용 우

지방의무기정

건축지도과  
지방건축기좌 김 동 환

지방공무원법 제 69조제 1항 1,2, 3호  
의 규정에 의거 해임에 처함

복직을 명함.  
5호봉을 급함  
종합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장